

손해 보험은 ①**보험자**와 ②**보험 계약자**가 우연한 사고(보험 사고)로 인해 ③**목적물**에 발생할 ④**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보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보험이다. 손해 보험은 보험 사고로 인한 (⑤)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⑥) 이익을 얻는 수단은 아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⑦) 보상을 받을 때에는 실제 손해 이상을 받을 수 없다는 ⑧'**이득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보험자가 보험 금액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⑨) 별개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⑩) 이득을 취할 수도 있다. ⑪**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법에서는** 일정 요건이 갖추어지면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보험자 대위'라고 한다.

⑫**보험자 대위**는 법적으로 ⑬**당사자** 간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성립되는 양도 행위가 아니며, 대위의 요건이 충족되면 피보험자의 의사 표시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성립되는 것이다. 보험자 대위가 성립되면 피보험자가 가진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보험자에게 ⑭**이전**된다. 보험자 대위가 성립되는 요건에 대해서는 상법 제681조와 제68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잔존물 대위'와 '청구권 대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⑮**잔존물 대위**에 대해 상법 제681조에서는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 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목적의 전부가 멸실되었다는 것은 계약 체결 당시의 목적물이 지닌 형태나 기능이 없어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보험 금액을 전부 지급했다는 것은 계약한 금액을 전부 지급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 가액 2천만 원인 자동차가 화재로 전소되어 보험자가 (⑯) 2천만 원의 보험 금액을 지급했다면, 잔존물 전체에 대한 권리는 보험자에게 이전된다. 계약 시 보험 가액의 일부만 보험에 붙인 경우라면 보험자는 보험 가액에 대한 ⑰**보험에 붙인 금액**의 비율, 즉 부분 비율만큼의 권리를 얻게 된다. 만약 보험가액 2천만 원에 1천만 원만 보험에 붙였다면 보험자는 잔존물의 1/2에 대해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규정을 둔 이유는 (⑱) 잔존물에 고철과 같은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피보험자는 이를 처분하여서도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자가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얻게 되면 폐기물 처리와 같은 부수적 의무도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⑲**잔존물의 경제적 가치가 폐기물 처리 비용보다 작다면 대위권의 행사가 보험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자는 약관에 '보험자가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잔존물은 보험자의 소유가 된다.'와 같은 ⑳**대위권 포기**와 관련된 조항을 넣기도 한다.

㉑**청구권 대위**에 대해 상법 제682조에서는 '손해가 ㉒**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3자로 인해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제3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 계약을 근거로 (㉓) 보험 금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제3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과 (㉔) 보험 금액 청구권은 별개의 것이므로 (㉕) 두 가지 청구권을 모두 행사할 경우 (㉖) 피보험자는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권리를 가지도록 한 것이 청구권 대위이다. ㉗**청구권 대위**

는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청구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목적물의 전부가 멸실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손해를 입는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청구권 대위의 요건이 되는 '제3자'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보험자,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를 제외한 사람이 될 수 있으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도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가 아니라면 ㉔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㉔**보험자가 청구권 대위를 통해 제3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을 얻었으나** 제3자가 손해를 완전히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 가액 1억 원의 건물에 5천만 원만 보험에 붙였는데, 제3자의 과실로 건물이 전소되었다고 하자. 보험자는 5천만 원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고 ㉕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얻게 된다. 만약 제3자의 배상 능력이 6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면, ㉖**4천만 원의 손해**는 메워지지 않는다. 이 경우 보험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 및 피보험자와의 분배에 대해서는 ㉗**세 가지 학설이 대립**된다.

'절대설'은 보험자가 상법의 조항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것으로, 보험자는 지급 금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받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만 피보험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위의 예에 적용해 보면 보험자는 제3자로부터 우선적으로 5천만 원을 받고, 나머지 천만 원은 피보험자가 받게 된다. '상대설'은 ㉘**제3자의 배상액을 ㉙부보 비율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위의 예에서 부보 비율이 1/2이므로, 보험자가 1/2인 3천만 원을, 피보험자가 나머지 3천만 원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 ㉚**'차액설'**은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우선적으로 손해를 배상받고 나머지가 있으면 보험자가 이를 대위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위의 예에서 피보험자는 보험 금액과 손해 배상 청구를 통해 손해액의 전부인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자는 제3자에게 남은 천만 원에 대해 대위를 통해 청구를 할 수 있다. 세 학설 중 ㉛**차액설이 통설로 인정받고 있는데, 보험의 목적상 이득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피보험자의 손해 보전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1. ㉑과 ㉒가 '보험 회사'와 '보험 회사와 보험 계약을 맺은 사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서술하세요.

㉑	
㉒	

2. ㉓의 의미를 서술하세요.

3. 다음은 ㉜와 ㉝에 들어갈 알맞은 말입니다. 빈 칸을 채우세요.

㉜	(            )의
---	-----------------

⑥ ( )이/가

4. 다음은 ⑦에 들어갈 알맞은 말입니다. 빈 칸을 채우세요.

( )로 인한 ( )에 대한

5. 다음은 ⑧이 적용되는 이유에 설명한 것입니다. 빈 칸을 채우세요.

피보험자가 손해 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금액이 ( )로 인한 ( )보다 큰 경우, 피보험자는 ( )을/를 보게 되고, 이는 손해 보험의 ( )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이다.

6. 다음은 ⑨에 들어갈 알맞은 말입니다. 빈 칸을 채우세요.

( )을/를 받을 권리와는

7. 다음은 ⑩에 들어갈 알맞은 말입니다. 빈 칸을 채우세요.

( )의 ( )에도 불구하고

8. 다음은 ⑪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빈 칸을 채우세요.

피보험자가 ( )을/를 받을 권리와는 별개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 보험을 통해 ( )을/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는 ( )될 수 없는 상황으로 법률에는 이러한 상황을 ( )하기 위한 규정이 존재한다.

9. ⑫와 관련해 ⑬에 해당하는 대상을 서술하세요.

10. ⑭의 결과를 ①과 ④의 입장에서 서술하세요.

11. 다음은 ⑯에 들어갈 알맞은 말입니다. 빈 칸을 채우세요.

( )에게

12. 다음은 ⑰에 대한 설명입니다.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거나 빈 칸을 채우세요.

계약 시 보험 가액의 일부만 보험에 붙인 경우, 보험 사고가 발생해도 ( )은/는 ⑰(을 넘어서/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다. 즉, ⑰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다면/발생하더라도) ⑰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보상받을 수는 없다).

13. 다음은 ⑱에 들어갈 알맞은 말입니다. 빈 칸을 채우세요.

보험의 ( )이/가 ( )되고 남은

14. 다음은 ㉕에 대한 설명입니다.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거나 빈 칸을 채우세요.

(보험자/피보험자)가 (보험자/피보험자)에게 보험 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상황에서 (보험자/피보험자)가 목적에 대한 권리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보험자/피보험자)는 보험 금액의 전부를 지급받아 사고로 인한 금액을 모두 보상받은 이후 목적에 대한 권리를 통해 잔존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추가로 챙길 수 있다. 그 결과 (보험자/피보험자)는 결과적으로 ( )을/를 보게 되고, 이는 ( )의 원칙에 어긋난다.  
반면, (보험자/피보험자)가 (보험자/피보험자)에게 보험 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상황에서 (피보험자)가 목적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된다면 (보험자/피보험자)는 잔존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추가로 챙길 수 없다. 결국 잔존물 대위는 (보험자/피보험자)가 ( ) 이후에 결과적으로 ( )을/를 보게 되는 것을 방지해 ( )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5. ㉕의 이유를 서술하세요.

--

16. ㉕의 목적을 서술하세요.

--

17. ㉕의 의미를 서술하세요.

--

18. 다음은 ㉓과 ㉔에 들어갈 알맞은 말입니다. 빈 칸을 채우세요.

㉓	( )에게
㉔	( )에 대한

19. 다음은 ㉖에 들어갈 알맞은 말입니다. 빈 칸을 채우세요.

( )가
------

20. 다음은 ㉗에 들어갈 알맞은 말입니다. 빈 칸을 채우세요.

피해에 대해 ( )해서 보상받은 결과

21. ㉔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1) 다음은 ㉔에 대한 설명입니다.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거나 빈 칸을 채우세요.

제3자로 인해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피보험자/제3자)는 (보험자/피보험자/제3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과 (보험자/피보험자/제3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모두 갖는다. 따라서 (보험자/피보험자/제3자)가 (보험자/피보험자/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피보험자/제3자)의 ( ) 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보험자/피보험자/제3자)는 이미 보험금을 지급받은 상황에서 ( )까지 받아 결과적으로 ( )을/를 보게 될 수 있고, 이는 ( )의 원칙에 어긋난다.

청구권 대위는 제3자로 인해 보험 사고가 발생한 이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기존에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손해 배상 청구권을 보험자에게로 이전함으로써 (보험자/피보험자/제3자)가 ( ) 이후에 결과적으로 ( )을/를 보게 되는 것을 방지해 ( )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다음은 제3자의 과실로 보험의 목적물이 훼손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누가 누구에게 어떤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표를 완성하세요.

(a : 총 피해액, b : 보험금)

사람	받는 금액(X)		보내는 금액(Y)		'총액' 결과 (= X - Y)
피보험자	보험자에게		보험자에게		
	제3자에게		제3자에게		
	총액		총액		
보험자	피보험자에게		피보험자에게		
	제3자에게		제3자에게		
	총액		총액		
제3자	피보험자에게		피보험자에게		
	보험자에게		제3자에게		
	총액		총액		

23. 다음은 ㉔에 대한 설명입니다.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거나 빈 칸을 채우세요.

잔존물 대위는 보험 목적물 ( )이/가 ( )되어 (보험자/피보험자/제3자)가 (보험자/피보험자/제3자)에게 보험 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경우, (보험자/피보험자/제3자)가 목적물의 ( )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목적물 ( )의 ( )'로 인한 '( )'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의 전부가 멸실되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다.

반면 청구권 대위는 (보험자/피보험자/제3자)가 (보험자/피보험자/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피보험자/제3자)에 대한 해당 금액만큼의 손해 배상 청구권이 (보험자/피보험자/제3자)에게서 (보험자/피보험자/제3자)에게로 이전된다는 내용이다. 이는 본문의 사례에서 보듯 목적물 ( )의 ( )이/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24. 다음은 ㉔에 들어갈 알맞은 말입니다. 빈 칸을 채우세요.

( ), ( ), ( )와 마찬가지로

25. ㉔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위한 전제조건(상황) 2가지를 서술하세요.

25. 다음은 ㉔에 들어갈 알맞은 말입니다. 빈 칸을 채우세요.

그 ( )의 ( ) 내에서

26. 다음은 ㉔에 대한 설명입니다.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거나 빈 칸을 채우세요.

제3자의 과실로 보험의 ( )이/가 훼손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3자의 배상 능력이 충분하다면, 즉 제3자의 배상 능력이 피해액 ( )이라면 제3자가 피해액 ( )을/를 ( )와 ( )에게 분배하여 지급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제3자에 의한 피해액에서 제3자가 배상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 )이/가 되므로 금전적인 요소만 고려했을 때는 피해 보상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면, 제3자의 배상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즉 제3자의 배상 능력이 피해액 ( )이라면/라면 제3자가 자신의 배상 능력의 한도만큼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자에게 분배하여 지급하더라도 제3자에 의한 피해액에서 제3자가 배상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 )보다 (커/작아) 피해 보상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때 제3자에 의한 피해액에서 제3자가 배상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피해액에서 제3자의 ( )만큼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된다. 예를 들어 제3자의 과실로 인해 보험 금액 1억 원인 건물이 전소되었는데 제3자의 배상 능력이 6천만 원인 경우, 최종적으로 ( )에서 ( )을 차감한 ( ) 원에 대한 피해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 경우 피보험자와 보험자가 해당 손해액을 부담하게 되므로, 둘 중 최소한 하나는 ( )을/를 볼 수밖에 없다.

26. 다음은 ㉔의 이유에 대해 설명한 것입니다.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거나 빈 칸을 채우세요.

제3자가 손해를 완전히 배상할 능력이 (있는/없는) 경우, 보험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피보험자와의 분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지 않는다. 그냥 ( )에 있는 ( )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보험자/피보험자/제3자)가 자신이 지급한 금액에 대한 권리를 전부 가질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제시된 사례를 이용해 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보험 가액 1억 원의 건물에 5천만 원만 보험에 붙었는데 제3자의 과실로 건물이 전소되었고 제3자가 1억 원 이상의 배상 능력을 갖춘 경우 다음과 같다. (보험자/피보험자/제3자)는 (보험자/피보험자/제3자)에게 ( )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에 따라 (보험자/피보험자/제3자)가 지급한 ( ) 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은 (보험자/피보험자/제3자)에게서 ( )에게로 이전된다. (보험자/피보험자/제3자)는 원래 (보험자/피보험자/제3자)에게 보험 가액 1억 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손해 배상 청구권의 이전 이후 보험자와 피보험자 모두 ( )에 대해 ( )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3자는 1억 원 이상의 배상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보험자에게 ( ) 원을 손해 배상하고, 피보험자에게 ( ) 원을 손해 배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제3자)에게 ( ) 원을 지급했으나 그 금액을 (피보험자/제3자)에게 지급받아 결론적으로 손해를 (보고/보지 않고), 피보험자는 ( )와/과 ( )로부터/으로부터 ( ) 원을 지급받아 보험 가액 ( ) 원 ( )을/를 배상받게 되므로 결론적으로 손해를 (본다/보지 않는다).

하지만 제3자가 손해를 완전히 배상할 능력이 (있는/없는) 경우 '절대설/상대설/차액설'의 관점에 따라 ( )의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보험 가액 1억 원의 건물에 5천만 원만 보험에 붙었는데 제3자의 과실로 건물이 전소되었고 제3자가 6천만 원의 배상 능력을 갖춘 경우, ( )의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보험자/피보험자/제3자)는 (보험자/피보험자/제3자)에게 ( )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에 따라 (보험자/피보험자/제3자)가 지급한 ( ) 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은 (보험자/피보험자/제3자)에게서 (보험자/피보험자/제3자)에게로 이전된다. 그런데 (보험자/피보험자)가 이에 따라 제3자에게 ( )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 손해 배상이 이루어지고 나면, 제3자가 피보험자에게 배상할 수 있는 금액은 ( ) 원밖에 남지 않는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 ) 원을, 제3자로부터 ( ) 원을 지급받아 결론적으로 ( ) 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보험자/피보험자/제3자)가 결론적으로 ( )을/를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 )의 원칙'에는 부합한다. 그러나 (보험자/피보험자/제3자)는 ( )을/를 하나도 보지 않는 반면, (보험자/피보험자/제3자)가 모든 ( )을/를 다 떠안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에 따라 제3자가 손해를 완전히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 보험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피보험자와의 분배를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한 여러 학설이 제기될 수 있다.

26. 제시된 상황에서 ㉓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서술하세요.

27. 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뒷부분의 내용을 보고 다음 표를 완

성하세요. (a : 부보 비율)

피보험자에게 분배되는 비율	
보험자에게 분배되는 비율	

28. 다음은 ㉔에 대한 설명입니다.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거나 빈 칸을 채우세요.

보험 가액 1억 원의 건물에 5천만 원만 보험에 붙였는데 제3자의 과실로 건물이 전소되었고 제3자가 6천만 원의 배상 능력을 갖춘 경우 다음과 같다. (보험자/피보험자/제3자)는 (보험자/피보험자/제3자)에게 ( )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자/피보험자/제3자)는 (보험자/피보험자/제3자)에게 ( ) 원을 손해 배상한다. 이렇게 되면 (보험자/피보험자/제3자)는 보험 가액 전액을 배상받아 손해를 보지 않는다. 제3자에게 남아 있는 금액, 즉 ( )은/는 ( ) 원인데, (보험자/피보험자/제3자)는 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보험자/피보험자/제3자)는 ( ) 원만큼의 손해를 보는 반면, (보험자/피보험자/제3자)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

29. 다음은 ㉕에 대한 설명입니다.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거나 빈 칸을 채우세요.

보험 가액 1억 원의 건물에 5천만 원만 보험에 붙였는데 제3자의 과실로 건물이 전소되었고 제3자가 6천만 원의 배상 능력을 갖춘 경우, 학설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설	손해 분배 결과		
	총 손해액	피보험자의 손해액	보험자의 손해액
절대설	4천만 원	( ) 원	( ) 원
상대설		( ) 원	( ) 원
차액설		( ) 원	( ) 원

세 학설 모두 (보험자/피보험자)가 ( )을/를 보지는 않으므로 ( )의 원칙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차액설을 제외한 나머지 학설에 따른 경우 (보험자/피보험자)에게 ( )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보험의 원래 취지는 보험 사고에 의해 발생한 (보험자/피보험자)의 ( )을/를 보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의 취지를 고려할 때, 차액설이 가장 합리적이다.